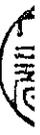


2022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2년 4월 12일(화) 14:00~15:00
- ◎ 회의장소      본관 4층 소회의실
- ◎ 참석위원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이강오(학생문화처장)  
                      이재승(기획예산팀장)  
                      정희진(학교법인 차장)  
                      박주영(학부부총학생회장)  
                      심동주(학부총학생회복지국장)  
                      김창배(전국퇴직금융인협회장)
- ◎ 불참위원      민정우(주간MBA원우회장)  
                      유수경(대학원총학생회장)
- ◎ 배석            박진철(재무팀장)  
                      안미경(재무팀 과장)  
                      오서준(간사, 기획예산팀 과장)



[안건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1. 안건 내용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단위: 억 원)

구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합계
세입	1,038.0	514.8	1,552.8
세출	1,031.7	521.1	1,552.8

\* 세입 : 등록금, 전입기부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본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자본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2. 회의 내용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관련

①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적립금증가액

외부전문가위원 운영계산서의 고정자산처분이익 28.1억 원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적립금 증가액 32.1억 원의 대부분이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인한 것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은 학교 토지를 대토로 보상받음에 따라 기존 토지의 장부가액과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과의 차이임. 또한 적립금증가액은 자금계산서상의 기부금, 법인 이냐시오장학기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임을 설명함

② 학생경비

학생위원 자금계산서상의 학생경비 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1 교내·외장학금,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학생지원비 등이 있음을 답변함

교직원위원2 학생경비도 세부 증감내역을 표시해주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을 건의함

③ 등록금의존율

외부전문가위원 수입 중 등록금 비율이 몇 년 전엔 55%대 정도였는데, 오늘 자료로는 70%대로 보임. 다른 학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대학정보공시의 재정회계지표상의 등록금의존율은 66%이며, 국내 전체 대학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과 비교 시 더 낮은 수준은 아님. 기부금 유치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등록금의존율을 낮추고자 노력 중임을 설명함

④ 교육부대수입

학생위원 자금계산서상 시설사용료, 대여료가 전년대비 3.5억 원(기숙사 2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 비교연도인 2020회계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워낙 감소했었기 때문에 2021회계의 해당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표기되나,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 평년 대비 증가한 수준은 아님을 답변함

3. 의결 사항

- 안전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안건 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안건 내용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57호, 2022.02.07.)에 따른 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	기 반영, 개정 필요 없음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	규정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	규정 제7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으로 이동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	규정 제7조제4항 신설

2. 회의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① 학생위원 참여에 관한 보상 검토

외부전문가위원 학생위원들이 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소정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건의함

교직원위원1 본교는 위원회 참여에 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음을 답변함

교직원위원2 학생 대표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해서 반드시 보상이 필요할지는 고민되는 부분임을 설명함

3. 의결 사항

- 안전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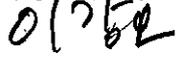
2022. 4. 12.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김길선 기획처장 (교직원위원)

(교직원위원)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이재승  
기획예산팀장



정희진  
학교법인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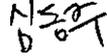


(학생위원)

박주영  
학부총학생회장



심동주  
학부총학생회복지국장



(외부전문가위원)

김창배  
전국퇴직금융인협회장

